원데이 헌법

2017년 국가직 7급

정답표 (가 책형)

④②①③③ ②④①③①
④①③①④ ②③③①④

01

④

헌법전문

02

②

▪영토조항해석과 관련문제

남북한 UN동시가입
국제연합헌장 제4조는 그 가입자격을 국가로 규정하는바, 헌법재판소는 국가 승인의 상대효에 입각하여 남북한 UN동시가입과 영토조항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 /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7.01.16. 92헌바6등)

03

①

▪문화국가원리 내용 :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문화의 육성과 진흥, 문화적 평등의 확보 / 헌재관례 "오늘날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헌재 2004.05.27. 2003헌가1), "과거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국가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헌재 2004.05.27. 2003헌가1)."

04

③

▪헌재관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내용**(보호영역)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실체 즉, 권리내용을 규범 상대방에게 요구할 힘이 있고 그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평화적 생존권'** 필요성 혹은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 부정) (헌재 2009.05.28. 2007헌마369)

05

③

ㄷ. (X)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의 친생자 추정의 민법 규정(잠정적용 헌불 -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O),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O)**,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X), 혼인의 자유 제한(X), 성적자기결정권 제한(X), 재산권 제한(X), 인격권 등의 침해 여부를 검토하면서 판단하는 이상 이에 관한 평등권 침해 주장은 다시 별도로 판단(X)) (헌재 2015.04.30. 2013헌마623) 📖 "친생추정제도는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2013헌마623) ★★★

06

②

평등권이 침해된 판례(多) 이외 모두 합헌

07

④

ㄱ. (O)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위헌 - 결사의 자유 침해(O), 표현의 자유 침해(O)) (헌재 2016.11.24. 2015헌바62)

08

①

▪ '보안처분'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여부 ★

▪ 이원설
▪ **원칙 : 부적용(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 :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 예외 : 예외적으로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처벌금지원칙을 적용

09

③

수형자의 헌법소원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교도소장이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위헌확인 → 변호사와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 접견제한'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헌법적 해명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 각하(O), 녹음·기록한 행위는 재판청구권 침해(O)) 【주의】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허용재량을 규정한 법률조항 자체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 (헌재 2013.09.26. 2011헌마398) ↔ ⅰ 징벌혐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청구인이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합헌 - 2014.09.25. 2012헌마523), ⅱ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가 배우자와 접견하는 것을 녹음한 행위 및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합헌 - 헌재 2012.12.27. 2010헌마153)

10

①

ㄱ. (O) / ㄴ. (O)

▪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리

▪ 국가인권위원회 : 헌재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거나 수행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들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헌재 2004.08.26. 2002헌마302),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5.03.26. 2013헌마214 등) cf 국가인권위원회 → 권한쟁의 당사자 不可(헌재 2010.10.28. 2009헌라6) ★

11

④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12

①

▪ 행정각부 : 헌재판례 "헌법이 행정각부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그 '설치'에 관한 사항까지도 법률에 위임한 이상 '행정각부'의 의미는 위임된 법률에 의하여 해석·판단하여야 한다. 그 기관의 장(長)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부령을 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각부로 볼 수 없다.

13

③

일반법관(판사)의 정년 : 65세

▪ 법관의 정년제 : **정년(임기)제도 자체는 헌법에서 규정, But 정년제의 차등은 법률에서 규정** / 헌재판례 "정년제 자체 → 헌법사항으로 위헌심사 不可, 정년제의 차등 → 평등원칙 위배 X(헌법 제11조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14

①

조세 관련 위헌인 판례(多) : ① 상속재산가액 평가시기 차등 -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상속 당시의 가액이 아닌 '**상속세(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법(위헌 - 헌재 1992.12.24. 90헌바21)

15

①

ㄱ. (O)

▪ 계엄해제'요구'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 계엄해제요구하면 반드시 해제(국무회의 심의 要) /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서는 해제요구 不可(해제건의는 可) ★

16

②

제54조
②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17

③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회의장 : 상임위원회 소집요구 可, 임시회 소집요구 不可, 휴회가 된 회의 재개요구 可

국회에서의 정족수 비교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 휴회 중 속개요구(제8조 제2항)

18

③

ㄴ. (X)

▪ 헌재판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잘못되었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각하할 수 있다."

19

①

▪ **대법**판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 "위헌판단 기준 : '현행'헌법(유신헌법(X)) →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9호'는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것이다." → "침해된 기본권 :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청원권,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의 자유 침해" →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폐지되기 전 유신헌법하에서도 위헌" →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하여야 → 형사보상청구 可"(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제1호), 2013.4.18. 결정 2011초기689(제9호), 2013.5.16. 선고 2011도2631(4호) 전원합의체 판결) cf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다만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나 그 상속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4.10.27.

2013다217962) ★

▪ 헌재판례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그 심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권한을 분배하고 있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특히 '관습법'도 포함됨을 주의!)된다. 이때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느냐 여부는 그 규범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적 효력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 여부 심사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 "위헌판단 기준 : '현행'헌법(유신헌법(X)) →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것이다." → "침해된 기본권 :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청원권,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명확성의 원칙(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비례)원칙, 국민투표권(참정권), 집회·시위의 자유,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 침해" (헌재 2013.03.21. 2010헌바132) ★

20

④

ㄴ. (X)

▪ 의장불신임의 의결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지방자치법 §55)